

2012년 과학기술 정책연구비 산정기준(안)

I. 목 적

- 「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8조(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)에 따라 과제 응모자가 작성하는 과학기술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에 계상되는 정책연구비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공
- 과제담당관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·조정 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

II. 기본방침

- 본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정책연구비 산정에 적용함.
 - 자문연구원 용역의 비용 산정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
- “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회계예규 : 회계예규 2200.04-160-9, 2011.5.13)”의 “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”방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,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현장의 현실을 반영

III. 항목별 비용산정기준

- “예정가격 작성기준”을 적용하되,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“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(개정 2011.5.23.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7호)”을 부분적으로 반영
- 자문연구원 용역의 비용 산정은 별도의 기준에 의함

IV.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

-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서

- 비목은 인건비, 경비, 일반관리비로 구성하며 이윤은 지급하지 않음

- 환율은 미화 1\$당 1,070원('12년 예산편성시 적용 기준환율)으로 함

- 인건비

- “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회계예규 : 2200.04-160-9, 2011.5.13)의 기준단가를 적용하되, 동 예규에서 인정한 근로기준법상의 ①상여금 ②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

- 경 비

- 경비는 여비, 유인물비, 전산처리비,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, 회의비, 임차료, 교통통신비, 감가상각비를 말함
-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, 시작품제작비, 연구관리비, 위탁연구개발비는 불인정. 다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는 임차료로 인정
-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연구용 장비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인정
-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물비로 해소

- 일반관리비

- 간접비 대신 일반관리비(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%이내)를 인정

V. 비목별 계상기준

가. 총 괄

비 목	계 상 기 준
○ 인건비	·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·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, 근로기준법상의 상여금,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·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급되는 개인 인건비 총액이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는 개인별지급인건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
○ 경 비	
- 여 비	·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·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· 국내·외 여비중 교통비와 항공료는 실비로 인정 ·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 라목, 연구원은 제2호 가목, 연구보조원은 제2호 나목을 기준
- 유인물비	· 계약목적에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, 인쇄, 문헌복사비
- 전산처리비	·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
- 시약및 연구용 재료비	·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이하
- 회의비	·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, 토론회, 공청회,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· 자문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, 1인당 1회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·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 - 기본료 : 70,000원 - 초 과 : 30,000원 ※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
- 임차료	·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 · 계약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
- 교통통신비	·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, 전신전화사용료, 우편료
- 감가상각비	·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·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
○ 일반관리비	(인건비 + 경비)의 5%이내

나. 인건비

○ 지급기준(월급료)

(단위:원)

구 분	기준단가	비 고
책임연구원	2,915,894	※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. ※ 상기단가는 2011년도 기준단가로 회계예규 「예정 가격 작성기준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(2011년 4.0%)를 반영한 단가이며,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
연구원	2,235,867	
연구보조원	1,494,604	
보 조 원	1,120,991	

○ 직급별 적용기준

구 분	책임연구원	연구원	연구보조원	보조원
기업, 단체 등	○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○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○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○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	○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○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○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○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	○전문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○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	○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
대 학	○부교수 수준의 기 능 보유	○조교수 수준의 기 능 보유	○조교정도의 전문 지식	○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
출연 연구기관	○책임연구·기술원 ○선임연구원 5년이상	○선임연구·기술원 5년이하 ○연구원	○기능직	○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

※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,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

다. 국내여비

(단위 : 원)
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일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
책 임 연구원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20,000	25,000	실비
연구원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0,000	20,000	실비 (상한액 : 40,000)
연구보조원 이하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0,000	20,000	실비 (상한액 : 40,000)

※ 1)공무원여비규정(대통령령 제23501호, 2012.1.6) 반영

2)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

라. 국외여비

(단위 : US\$)

구 분	등 급	일 비	숙박비	식 비
책임연구원	가	35	실비(상한액:223)	107
	나	35	실비(상한액:160)	78
	다	35	실비(상한액:112)	58
	라	35	실비(상한액:79)	49
연구원	가	30	실비(상한액:176)	81
	나	30	실비(상한액:137)	59
	다	30	실비(상한액:91)	44
	라	30	실비(상한액:75)	37
연구보조원이하	가	26	실비(상한액:155)	67
	나	26	실비(상한액:123)	49
	다	26	실비(상한액:77)	37
	라	26	실비(상한액:71)	30

※ 1)공무원여비규정(대통령령 제23501호, 2012.1.6) 반영

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가등급 : 동경, 뉴욕, 런던, 로스앤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, 파리, 홍콩
나. 나등급

- (1) 아시아주·대양주 : 대만, 북경, 싱가포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일본
- (2) 남·북아메리카주 : 멕시코, 미국, 브라질, 세이셸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키츠네비스, 아르헨티나, 아이티, 자메이카, 캐나다
- (3) 유럽주 :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체코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- 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가봉, 남아프리카공화국, 수단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우간다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

다. 다등급

- (1) 아시아주·대양주 : 뉴질랜드, 마셜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네시아, 중국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태국, 터키, 파키스탄, 파푸아뉴기니, 필리핀
- (2) 남·북아메리카주 : 가이아나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도스, 벨리즈, 세인트빈센트, 안티구아바부다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
- (3) 유럽주 : 그리스, 리투아니아, 불가리아, 아일랜드, 알바니아, 유고슬라비아, 포르투갈, 폴란드
- 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리비아, 모리시어스, 모잠비크, 바레인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사우디아라비아, 상토메프린시페, 시에라리온, 요르단, 이란, 이스라엘, 이집트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카메룬, 카타르, 케냐, 탄자니아

라. 라등급

- (1) 아시아주·대양주 : 네팔, 라오스, 마이크로네시아, 몽골, 미얀마, 스리랑카, 캄보디아, 피지
- (2) 남·북아메리카주 : 과테말라, 베네수엘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에쿠아도르, 엘살바도르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
- (3) 유럽주 : 몰도바, 보스니아-헤르체코비나, 에스토니아, 크로아티아
- 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가나, 감비아, 기네비스, 기니, 나미비아, 나이지리아, 레바논, 레소토, 르완다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로코, 모리타니아, 세네갈, 소말리아, 스와질랜드, 알제리, 예멘, 이디오피아, 이라크, 잠비아, 짐바브웨, 튀니지

2.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

마. 회의비

○ 자문회, 토론회, 공청회 등의 소요경비

- 참석자 수당 : 당해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
(기본료 : 70,000원,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 30,000원 추가 지급)
- 정책간담회(과학기술정책연구회 등) 1회 400,000원 소요

※ 과학기술정책연구회 : 미래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구과제의 중간 또는 결과보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 공유 및 의견수렴(별도 요구시 실시)

[별표1] 비목별 정책연구비 소요명세서

비 목 구 분	금 액	구 성 비	비 고
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			
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			
일반관리비(%)			
총 원 가			